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12. 2.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11.16.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9.11. 19

다. 상정일자 :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2009.12. 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임 경 선 토목과장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세부내용에 맞추어 우리 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도로상의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 유지관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로 변경(안 제명)

2)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가)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변경(안 제1조)

(나)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76조로 변경(안 제4조)

3)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설치를 명문화함(안 제2조)

4) 현행 규칙에 규정한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3. 검토보고 [신승관 전문위원]

-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가 전부 개정되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와 일치시키고 근거법령 조문을 정비하여 도로상의 굴착복구 공사 및 사후 유지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고 제출한 것으로
- 조례 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른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 조례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제명 등 각종 용어를 법제처에서 기준을 정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문구를 보완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 타 : 없음